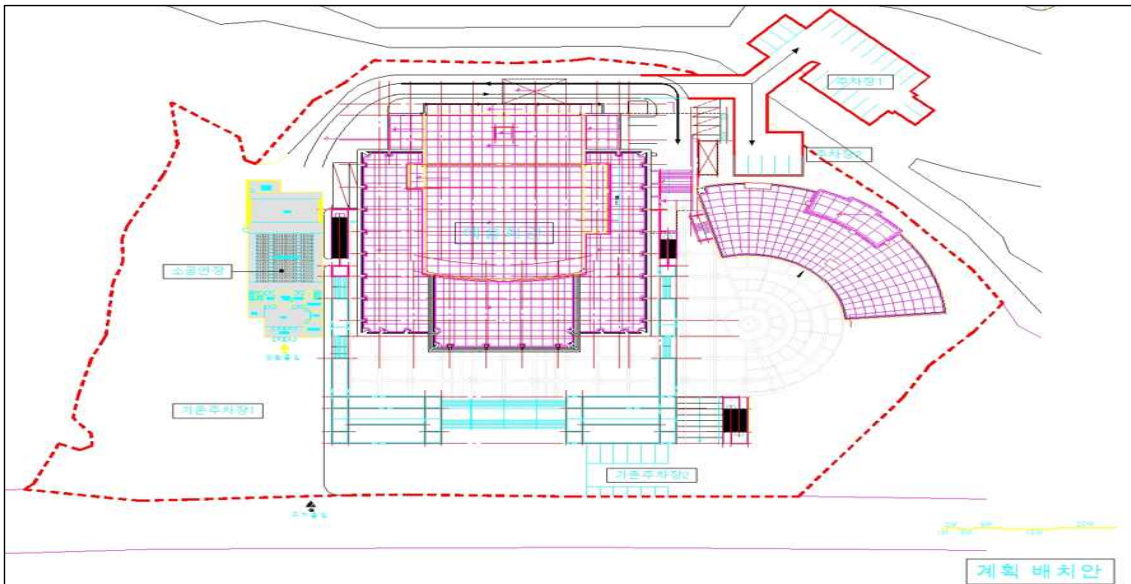


##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소공연장 건립)



〈사업장 위치도〉



〈사업장 배치도〉

##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 1. 제안이유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내용

- 1)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2)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3) 위탁사무
  -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
  -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운영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수탁자 선정

####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나. 선정대상 : 자격 요건 판매점

#### 다. 신청자격

##### 1)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자
-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성주군이 제시하는 마진율을 적용해 기념품 판매·운영이 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에 도·소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우대사항

- 관내 주요 관광지 근처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및 사업장(카페 등)을 두고 있는 자

- 라. 선정방법 :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서 평가
- 마. 선정기준 : 위치의 적격성 등 심사표에 의거 배점으로 평가

#### 4. 향후 추진계획

- 가. 위탁운영 모집 공고 : 2022. 12.
- 나. 위탁관련 계약 체결 : 2022. 12.
- 다.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 2023. 1.

#### 5. 참고자료(붙임)

- 가.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 나.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3조 (업무의 위탁)
- 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라. 판매점 운영방식

【붙임1】

【관 련 법 령】

■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위탁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유통·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
3. 제20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판매점 운영방식

연번	종류	내용	비고
1	일반판매점	판매가 대비 40% 정도 마진	
2	설치·운영 판매점	판매수익금은 군으로 불입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제출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김 현 희